

## 손해사정업무 위탁계약서

2023년 6월 30일

위탁자 : 캐롯손해보험 주식회사

수탁자1 : 히어로손해사정 주식회사

수탁자2 :

## 손해사정업무 위탁계약서

캐롯손해보험주식회사(이하 "위탁자"라 하며, 특수피해물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자 이다)와 히어로손해사정주식회사(이하 "수탁자1"이라 하며, "수탁자2"에 대한 관리 및 위탁자"의 업무를 지원하는 "수행자"이다)는 106-86-30223 리카운 화재배상 유상현 자동차손해사정(주) (이하 "수탁자2"라 하며, 특수피해물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다) "수탁자1"과 수탁자2" 를 통칭하여 "수탁자"라 한다. "위탁자"와 "수탁자"를 총칭하여 "당사자들"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특수피해물 자동차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업무 위탁계약(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### 제1조 [목적]

본 계약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자동차 보험사고 특수피해물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# 제2조 [용어의 정의]

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"보험목적"이라 함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를 말한다.
- ② "보험사고"라 함은 보험계약에서 고객에 대하여 위탁자의 책임을 구체화 시키는 우연한 사고를 말한다.
- ③ "고객"이라 함은 위탁자의 보험가입자(계약자, 피보험자, 보험수익자 등) 및 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.
- ④ "특수피해물"이라 함은 보험목적이 전기, 통신, 교통시설물, 수입이륜차 등

피해물의 특성상, 해당 피해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피해물을 말하며, 나열한 예시에 한정되지 아니 한다.

- ⑤ "손해사정업무"라 함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고조사 및 손해액 산정을 위한 일련의 행위로서, 다음 각 목의 업무를 포함 한다.

가.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및 원인의 조사

나. 보험목적의 현황 조사

다. 보험목적의 손해상황 조사

라. 보험목적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

마.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 여부 검토

바. 기타 손해사정에 필요한 사항

사. 상기 가. 목 내지 바. 목에 대한 손해사정 보고서의 제출

### 제3조 【계약기간 및 효력발생】

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로 하며, 본 계약서의 당사자 모두가 기명날인 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 단,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 부터 별도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.

### 제4조 【업무위탁 및 절차】

"위탁자"는 고객이 보험약관 등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, "수탁자1"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고 "수탁자1"은 전신주, 가드레일 등 특수피해물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서면 또는 유선 등 전자방식을 포함하여 위탁자의 동의 받은 후

“수탁자2”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.(단, “위탁자”의 신속한 사고처리 및 손해확대 방지를 위해 전신주, 가드레일 등 특수피해물에 대해서 “수탁자2”에게 선 위탁 후, “위탁자”에게 사후 동의를 받을 수 있다)

### 제5조 【위탁자의 의무】

“위탁자”는 제6조 1항에 따라 청구된 손해사정보고서 및 손해사정수수료 청구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8조에 따라 “수탁자2”에게 손해사정수수료가 지체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### 제6조 【수탁자1의 의무】

- ① “수탁자1”은 “수탁자2”가 제출한 손해사정보고서를 신속히 검토 후, 미비한 점이나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 신속히 보험금과 손해사정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“위탁자”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
- ② “수탁자1”은 “위탁자”가 정하는 선정·평가항목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를 시행하여 “수탁자2”에 위탁하는 물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,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의 연장 또는 계약의 해지를 통해 업체들의 업무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.

### 제7조 【수탁자2의 의무】

- ① “수탁자2”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업무 수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손해사정 업무를 완료하고,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“수탁자1”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, “수탁자2”는 “수탁자1”로부터 손해사정보고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 받은 경우 정당한

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.

- ② "수탁자2"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민원 또는 기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고,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③ "수탁자2"는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"수탁자1"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 또는 "수탁자2"가 직접 생성한 일체의 자료가 훼손 또는 멸실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 기록·관리·보존 하여야 하며, "수탁자1"로부터 해당 자료의 열람, 복사 및 반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른다.
- ④ "수탁자2"는 수탁업무의 처리 및 제2항에서 정한 자료의 기록·관리·보존을 위하여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"수탁자1"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"수탁자1"은 "수탁자2"에게 관리지침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⑤ "수탁자2"는 수탁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그 임직원들에게 고객 응대 방법 및 기타 "수탁자1"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#### 제8조 【보수의 지급방식 및 시기】

- ① "수탁자2"는 "위탁자"에게 위탁업무가 완료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 내역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고, "수탁자1"은 청구내역의 오류 등을 확인하여 "위탁자"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"위탁자"는 "수탁자2" 명의의 계좌에 지급 한다
- ② 제1항의 보수의 산정은 별첨 손해사정 수수료 조건표에 따르며, 해당 수수료

조건표에 없는 사항은 양 당사자가 상호 서면으로 협의하여 정한다.

### 제9조 【계약의 해지】

- ①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서면 합의로 본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- ②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최고 없이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. 이러한 경우 본 계약은 서면 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해지된다.
  - 가. 본 계약의 협조 내지 준수사항, 의무이행 등을 현저히 태만히 하여 상대방의 업무 수행 또는 그 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
  - 나.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행사 또는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부정·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
  - 다. 그 주요재산에 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지거나, 그에 대해 강제집행이 개시되거나, 또는 파산, 부도처리, 회사정리절차개시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계약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
  - 라.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
  - 마.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
  - 바. 일방이 제9조의 기밀 준수 및 개인(신용)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
  - 사. 수탁자의 임직원 중 손해사정업무 담당자의 1/3 이상이 일신상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사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본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
-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그 이전에 발생한 각 당사자의 권리 (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다)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#### **제10조 【면책】**

- ① "위탁자" 또는 "수탁자"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당사자는 본 계약 위반 또는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② 제1항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함은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천재지변 또는 법령의 개정, 폐지, 행정관청의 처분 등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의미한다.
- ③ 제2항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#### **제11조 【기밀 준수 및 고객 개인(신용)정보 보호 등】**

- ①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존재 및 내용,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 당사자의 영업비밀, 상대방 소유의 재산(상호, 상표 및 저작물)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안되며, 이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. 여기서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

것으로서 각 당사자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한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 정보와 이에 준하는 정보를 의미한다.

②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고객의 개인(신용)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그들의 사용자, 대리인, 법률 및 회계자문에게 위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
가. 본 계약의 양 당사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당사자가 모든 민,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.

나.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받은 정보, 자료, 문서 중에서 상대방 당사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것을 즉시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.

다. 본 조는 본 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유효하다.

## **제12조 【권리의무의 양도금지】**

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## **제13조 【신의성실의 원칙】**

양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의 내용을 준수한다.

## **제14조 【선정기준 및 평가】**



“수탁자1”은 “수탁자2”에 대하여 (붙임2) 세부평가 항목 기준에 따라 연간 실적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하여 추후 업무 의뢰 비율에 반영할 수 있으며 “수탁자1”은 위탁자에게 세부평가 결과를 제공한다.

#### **제15조 【손해배상】**

본 계약의 어느 일방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고객 또는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귀책 당사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#### **제16조 【보증보험】**

“위탁자”는 “수탁자2”의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 있는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“위탁자”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 5백만원(W5,000,000)의 손해배상 보장 예탁증서를 “수탁자2”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#### **제17조 【자료 제출 요구 및 실사】**

- ① “위탁자”는 “수탁자”가 위탁 받은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“위탁자”는 제1항의 제출된 자료 및 소명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“수탁자”의 사업장에 대한 직접 실사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③ “수탁자”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대한 “위탁자”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정당 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.

#### **제18조 【서면통지 등의 주소】**



수탁자는 본 계약내용의 이행이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행됨을 보증한다.

**제20조 【관할법원】**

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,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.

별 첨 : 손해사정 수수료 조건표 1부

세부평가항목기준 1부.

상기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3 부를 작성하며,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자 1 부씩 보관한다.

2023 년 6 월 30 일

"위탁자" : 캐롯손해보험 주식회사

서울 중구 을지로 100 파인에비뉴 B동 20층

대표이사 문 호 일 (인)



"수탁자1" : 히어로손해사정 주식회사

서울 중구 세종대로 17 와이즈타워 19층

대표이사 이 은 (인)



"수탁자2" :

**106-86-30223**

리카온화재해상

자동차손해사정(주)

서울시 금천구 가산 디지털로 70

호서대벤처타워 807호

서 비 스

손해사정

유상현



##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

캐롯손해보험 주식회사(이하 "캐롯손보" 라 하며, 특수피해물에 대하여 보험금을 부담하는 위탁사 이다)와 히어로손해사정 주식회사(이하 "히어로손사"라 하며, 수탁사에

108-86-30-223 대한 관리 및 업무를 원하는 "수행자"이다)

리카온화재해상 (위탁사) 수탁사"라 하며)는 20 년 월 일 손해사정업무

수탁계약(이하 "본 계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"위탁사"의

108-86-30-223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"수탁사"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(이하 "본 위탁계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### 제1조 (목적)

본 위탁계약은 "위탁사"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"수탁사"에게 위탁하고, "수탁사"는 이를 승낙하여 "수탁사"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용어의 정의)

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본 계약, 개인정보보호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(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)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.

### 제3조 (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)

"수탁사"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및 원인의 조사
2. 보험목적의 현황조사
3. 보험목적의 손해상황 조사
4. 보험목적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

- 5.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 여부 검토
- 6. 상기 1호 내지 5호에 대한 손해사정보고서의 제출

#### 제4조 (재위탁 제한)

- ① "수탁사"는 "위탁사"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"위탁사"와의 본 위탁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.
- ② "수탁사"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"수탁사"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"위탁사"에 통보하여야 한다.

#### 제5조 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

"수탁사"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,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(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-43호)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·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#### 제6조 (개인정보의 처리제한)

- ① "수탁사"는 본 위탁계약 기간은 물론 본 위탁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- ② "수탁사"는 본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「개인정보보호법」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"위탁사"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"수탁사"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"위탁사"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#### 제7조 (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 등)

- ① "위탁사"는 "수탁사"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"수탁사"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1.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
2.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
3.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
4. 목적외 이용·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
5.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
6.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② "위탁사"는 "수탁사"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"수탁사"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.
- ③ "위탁사"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( 1 )회 "수탁사"를 교육할 수 있으며, "수탁사"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"위탁사"는 "수탁사"와 협의하여 시행한다.

#### **제8조 (손해배상)**

"수탁사" 또는 "수탁사"의 임직원 기타 "수탁사"의 수탁자가 본 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"수탁사" 또는 "수탁사"의 임직원 기타 "수탁사"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위탁계약이 해지되어 "위탁사"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"수탁사"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"위탁사"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"위탁사"는 이를 "수탁사"에게 구상할 수 있다.

본 위탁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, "위탁사"와 "수탁사"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당사자 "위탁사" : 캐롯손해보험 주식회사  
서울 중구 을지로 100 파인에비뉴 B동 20층  
대표이사 문호일 (인)

히어로손해사정 주식회사  
서울 중구 세종대로 17 와이즈타워 19층  
대표이사 이은 (인)

당사자 "수탁사" : **106-86-30223**  
리카온화재해상 유상현  
신용보증재단(주)  
서울시 금천구 가산 디지털로 70  
호서대벤처타워 807호  
서비스 손해사정

